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인 제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로구 제2선거구 김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는 울진·삼척지역 산불,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
9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동물도 피해를 입었습니
다. 특히 반려동물은 대피시설에 데려갈 수 없어서 대피를 포
기하거나 방치하여 많은 동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진, 태풍, 산불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동물은
배제되어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2023. 4. 26. 시행)은 “소유자등은 재
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재난 시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근거를 마
련하였으나, 현재 동물 대피소 수용이나 대피 지원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재난재해 발생 시 피난처에 동물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 존중의 의미를 제고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방치된 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